

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정원의 총수) 구의 본청(이하 “구본청”이라 한다)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구본청 : 413명
2. 보건소 : 46명
3. 동 : 263명

제 3 조(직급별 정원의 규정) 구의 본청·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구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.